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6060호, 1999. 12. 28 공포)에 따라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시세로 신설하며,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시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 매매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1조)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절의2)
-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제48조)
-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시 사무처리비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리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함.(안 부칙 제2항)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주행세 신설등을 포함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예 따라 동법에 적합하게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삭제 [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나. 내용타당성

-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